

인도의 dynamic injunction과 dynamic+ injunction을 통한 선제적 금지명령과 한국의 사법적 대응 구축에 대한 시사점

I. 검토 배경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최근 특정된 상대방을 겨냥한 일대일의 분쟁 구조를 벗어났다.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하나의 침해 사이트를 차단하더라도, 거의 동일한 침해 사이트가 수 시간 내에 재등장하여, 특정 피고를 대상으로 하는 정적(static) 구제를 무력화하기 때문이다. 인도는 델리 고등법원의 일련의 판결을 통하여 John Doe(Ashok Kumar) 명령을 동적(dynamic) 금지명령으로, 나아가 동적 추가(dynamic+) 금지명령으로 발전시키는 사법적 대응을 구축하였다. 한국은 이와 별개로 2026. 5. 11. 시행된 저작권법 제133조의4의 긴급차단 권한을 통하여 행정적 대응을 구축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선 인도의 세 가지 제도의 법리적 전개와 실무상 작동 방식을 판결주문, 집행절차, 집행방식에 주목하여 설명하고, 한국의 신설 긴급차단 제도의 요건을 간략히 정리한 후, 한국의 사법적 체계, 즉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 실무에 “동적” 요소를 접목한다면 어떠한 점들을 유의하여야 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II. John Doe(Ashok Kumar) 명령

1. 기원과 명칭

John Doe 명령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침해하고 있으나 제소 시점에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피고들을 상대로 조치되는 선제적 금지명령이다. 이 제도는 영국 실무에서 유래한 것으로, 익명 당사자를 지칭하는 “John Doe”라는 관행에 그 연원을 둔다.¹⁾ 인도에서는 신원불명의 피고를 관행적으로 “Ashok Kumar”로 지칭하므로, 이 명령은 *Ashok Kumar* 명령으로 알려져 있다. 델리 고등법원은 2002년 FIFA 월드컵의 무단 방송을 금지하기 위한 *Taj Television Ltd. v. Rajan Mandal* 사건에서 신원불명의 케이블 사업자들을 상대로 ex parte 명령을 발령함으로써 이를 최초로 활용하였다.²⁾

1)Ajay Sharma, John Doe Orders in Indian Context, RMLNLU Law Review Blog (Oct. 25, 2017), <https://rmlnlulawreview.com/2017/10/25/john-doe-orders-in-indian-context/>, “Introduction” (“John Doe order is a pre-infringement injunction remedy”이라고 정의하고, 이 명령이 “Rolling Anton Pillar, Anton Pillar or Ashok Kumar order”로도 지칭되며 영국 Queen’s Bench에서 발전하였음).

2. 절차적 근거와 발령 요건 및 주문

John Doe 명령을 발령받기 위해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존속 중인 권리가 계속해서 침해받고 있고, (2) 선제적 구제를 받기 위한 일응의 청구원인을 소명해야 하며, (3) 피고의 침해행위가 재산상의 손해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³⁾ 이 명령은 통상 *ex parte ad interim*⁴⁾으로 발령되는데, 이는 개봉 직후의 영화나 생중계 스포츠 경기와 같이 상업적 “유통 수명”이 짧은 콘텐츠의 경우 모든 침해자의 특징을 기다릴 수 없다는 실무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John Doe 명령의 주문은 성명불상의 피고를 특정 지 시어로 표시한 뒤, 그들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형식을 취한다. 예컨대 위조 SanDisk 제품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들에 대한 사건에서 델리 고등법원은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John Doe’로 열거된 성명불상·신원불명의 자들”이 원고의 상표 SanDisk 및 그 로고와 동일한 위조 제품을 제조 또는 광고 하거나 이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문을 발령하였다.⁵⁾

3. 현대적 실무와 제기되는 우려

오늘날의 실무에서 John Doe 명령은 온라인 매개자를 상대로 발령된다. 법원은 인터

2) *Taj Television Ltd. & Anr. v. Rajan Mandal & Ors.*, [2003] F.S.R. 22 (Del. High Court 2002)(2002년 FIFA 월드컵 방영권자인 원고가 성명불상의 케이블 사업자들을 상대로 받은 *ex parte* 명령. 이 판결을 인도 최초의 John Doe/Ashok Kumar 명령으로 소개하는 문헌으로 Ramesh Vaidyanathan & Nidhi Tandon, *Ashok Kumar, the John Doe of India*, BTG Advaya (Aug. 19, 2022), <https://www.btgadvaya.com/post/ashok-kumar-the-john-doe-of-india> 참조.

3) Sharma, *supra* note 1, “Procedure to get a John Doe order in India” (“Firstly, the Plaintiff has to satisfy the Court that his/her right has been infringed; with instances of the previous breach and sporadic infringement by known and unknown persons. Secondly, the plaintiff has to establish a prima facie case before any pre-emptive relief can be granted. Thirdly, the plaintiff has to establish that, in the absence of the requested John Doe order, defendant’s actions will potentially result in some financial or irreparable damages.”). 인도 실무는 여기서 “establish”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이는 본안에서의 엄격한 증명이 아닌 임시적 구제를 위한 일응의 소명(*prima facie case*)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 이는 일시적 금지명령으로 긴급한 상황에 쌍방 변론 이전 한쪽 당사자의 신청과 증언을 토대로 내려지는 한시적 금지명령이다.

5) *Sandisk Corporation v. John Doe*, I.A. No. 20550/2014 (Del. High Court). 법원은 *ex parte ad interim* 금지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면서 그 주문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Accordingly, the unnamed and undisclosed persons arrayed as ‘John Does’ are restrained from manufacturing, selling, offering for sale, advertising, directly or indirectly, dealing in counterfeit products, which are identical to the products bearing the plaintiff’s Trade mark SanDisk and logo marks and the ‘Red Frame’ logo, with identical product packaging, product get-up, colour scheme, layout, overall look and feel as that being used by the plaintiff.” 주문의 원문 인용은 SpicyIP, “SpicyIP Tidbit: Sandisk gets John Doe order” (Nov. 12, 2014), <https://spicyip.com/2014/11/spicyip-tidbit-sandisk-gets-john-doe-order.html> 참조.

넷서비스제공자(이하internet service provider, 또는 “ISP”) 또는 SNS 플랫폼에 대하여 통지된 계정과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명하고, 저작권법, CPC, 2000년 정보기술법 제79조 및 2021년 IT Rules의 결합 체계 아래 저작권 권리자 측 대리인이 갱신된 침해 링크 목록을 제공하면 매개자가 이를 차단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⁶⁾ 다만 이러한 명령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작성되어 적법한 사이트의 과잉차단을 초래하고, 명예훼손과 같은 비(非)지식재산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⁷⁾

III. 동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

1. 사실관계와 불법 사이트(rogue website) 기준

인도 최초의 동적 금지명령은 델리 고등법원(Manmohan 판사)이 *UTV Software Communication Ltd. v. 1337X.to* 사건에서 발령하였다.⁸⁾ 8개 영화 제작사가 식별 가능한 웹사이트와 성명불상의 웹사이트들이 자신들의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⁹⁾ 핵심 쟁점은 특정 URL이 아닌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양적 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에 기초한 “불법 사이트(rogue website)” 기준을 채택하였다.¹⁰⁾

법원은 사이트를 “rogue”로 판정하기 위한 고려 요소로서, 사이트의 주된 또는 지배

6)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 79(1)(매개자의 면책: “an intermediary shall not be liable for any third party information”) 및 § 79(3)(b); Information Technology (Intermediary Guidelines and Digital Media Ethics Code) Rules, 2021, Rule 3(1)(d)(법원의 명령 또는 정부기관의 통지를 받은 때 36시간 이내의 접속 차단 의무). 실무 운용에 관하여는 Sharma, supra note 1참조.

7)Internet Freedom Foundation, A Tale of Rogue Pirates, Ashok Kumars and ISPs Caught in the Middle: RTI Data on Court Ordered Website Blocking Reveals Worrying Trends (2021), <https://internetfreedom.in/a-tale-of-rogue-pirates-ashok-kumars-and-isps-caught-in-the-middle-rti-data-on-court-ordered-website-blocking-reveals-worrying-trends-whattheblock/> (정보공개청구(RTI)로 확보한 차단 명령 자료를 분석하여, 명령이 광범위하게 작성되고 ISP가 그 판단 부담을 떠안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부분 참조).

8)UTV Software Communication Ltd. & Ors. v. 1337X.to & Ors., CS(COMM) 724/2017, 2019 SCC OnLine Del 8002; 2019 (78) PTC 375 (Del) (Manmohan, J., Apr. 10, 2019)(판결문: <https://indiankanoon.org/doc/47479491/>). 원고 측 주장의 요지는 ¶ 10에 “if one impugned website is blocked, several other mirror websites are created”로 기재되어 있다. 인도 최초의 동적 웹사이트 차단 금지명령이다.

9)UTV Software, supra note 8.

10) UTV Software, supra note 8, ¶ 62(Eros의 3단계 검증 기준 소개), ¶ 61(질적 기준이 국제적 실무임을 확인), ¶¶ 65-66, 68(양적 기준은 저작권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판단). Case Summary: UTV Software Communication Ltd. & Ors. vs. 1337x.To & Ors., LawLex.Org (May 22, 2019), <https://lawlex.org/lex-bulletin/case-summary-utv-software-communication-ltd-ors-vs-1337x-to-ors/20355> 참조.

적 목적이 저작권 침해의 실행 또는 조장에 있는지 여부, 침해의 명백성과 트래픽 규모, 차단 우회 방법의 안내 여부 등을 제시하고, 전면적 차단을 고려할 때에는 그 비례성과 필요성을 참고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권리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¹¹⁾

2. 배경

피고 사이트들을 “rogue”로 인정한 법원은 동일한 침해 사이트 문제에 직면하였다. 차단된 사이트는 짧은 시간 내에 또 다른 도메인으로 재등장할 수 있으므로, 일전의 구제 방식에 따르면 각 변형 사이트마다 새로운 소 제기와 새로운 사법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Disney Enterprises, Inc. v. M1 Ltd.* 판결을 명시적으로 차용하여, 이미 금지된 동일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접근 수단을 제공하는 데 불과한 변형 사이트에 효력이 확장되는 “동적” 금지명령을 창설하였다.¹²⁾

3. 판결주문과 집행 구조(집행절차 및 집행방식)

판결주문은 피고 사이트들과 그 변형 사이트가 원고들의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ISP에 접속차단을 명하며, 인도의 통신부(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가 그 이행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¹³⁾ 실제 주문은 특정된 도메인과 그 변형 사이트를 적시하여, “피고 웹사이트 및 그와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변형 사이트가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ISP는 이를 차단하라”는 형식을 취한다.¹⁴⁾ 새로운 변형 사이트마다 새로운 사법적 명령을 요구하는 대신, 원고는 해당 변형 사이트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면서, 그 사이트가 이미 금지된 사이트의 변형임을 확인하는 진술서(affidavit)와 증거를 첨부한다. 이 신청은 판사가 아니라 절차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법 공무원인 Joint Registrar 앞에 회부되며, Joint Registrar는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ISP에 대하여 새 도메인의 접속 차단

11)UTV Software, supra note 8, ¶ 58(불법 사이트 판정을 위한 고려 요소의 열거), ¶ 71(피고 사이트들을 rogue website로 인정), ¶ 80(전면적 차단은 필요성과 비례성을 고려해야 하고 그 책임은 “The onus is on the right holders to prove”라고 판시).

12)Disney Enterprises, Inc. & Ors. v. M1 Ltd. & Ors., [2018] SGHC 206 (Sing. High Court)(싱가포르 저작권법 § 193DDA에 근거한 동적 차단명령)(판결문: https://www.elitigation.sg/gd/s/2018_SGHC_206). UTV Software, supra note 7, ¶ 98(위 싱가포르 판결의 차용).

13)UTV Software, supra note 8, ¶¶ 99-101(금지명령 주문, ISP에 대한 차단 지시, DoT에 대한 통지 발령 지시 및 이용자 경고 정책의 검토 권고). 판결주문 형식의 정리는 Dynamic Injunctions as Relief Against ‘Rogue Websites’, ALG India Law Offices (Nov. 5, 2020), <https://www.algindia.com/delhi-high-court-grants-another-dynamic-injunction-against-unauthorized-streaming-websites/> 참조.

14) UTV Software, supra note 8, ¶ 99-101.

을 지시한다.¹⁵⁾ 따라서 실무적으로 “차단 사이트 목록”은 새로운 변형이 등장할 때마다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지 않고 행정적으로 갱신된다.

IV. Dynamic+ 금지명령: Universal City Studios v. Dotmovies.baby (2023)

1. 배경

2023. 8. 9. 델리 고등법원(Prathiba M. Singh 판사)은 *Universal City Studios LLC v. Dotmovies.baby* 사건에서 인도 최초의 “dynamic+” 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¹⁶⁾ Universal, Warner Bros., Columbia, Netflix Studios, Paramount, Disney의 6개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16개의 “명백한 침해 온라인 소재지(flagrantly infringing online locations, 이하 “FIOL”)”를 상대로 ex parte ad interim 금지명령을 받았다.¹⁷⁾

2. 판결주문과 집행 구조(집행절차 및 집행방식)

동적 추가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의 추가(“+”)는 시간적 확장성을 의미한다. 이전의 동적 금지명령이 기존 저작물을 변형 사이트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면, 동적 추가 금지명령은 원고들의 장래 저작물에 대한 보호 또한 제공한다. 장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되는 즉시 발생하고, 그러한 저작물은 공개 즉시 불법 복제될 급박한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 그 논거이다. 다만 법원 스스로도 이 구제가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¹⁸⁾ 이에 따라 판결주문은

15) UTV Software, supra note 8, ¶ 99-101 진술서 제출에 의한 확장 및 Joint Registrar에 대한 권한 위임). 실무 운용에 관하여는 Protecting the Beautiful Game: Evolution of Anti-Piracy Injunctions in India, LiveLaw (2026), Understanding Dynamic, Dynamic+ and Superlative Injunctions: No More Whac-a-Mole, Spice Route Legal (July 16, 2025), <https://spiceroutelegal.com/publications/understanding-dynamic-dynamic-and-superlative-injunctions-no-more-whac-a-mole/> 참조.

16) Universal City Studios LLC & Ors. v. Dotmovies.baby & Ors., CS(COMM) 514/2023, 2023:DHC:5842 (Del.) (Prathiba M. Singh, J., Aug. 9, 2023)(판결문: <https://indiankanoon.org/doc/156457058/>), ¶ 11(장래에 생성될 콘텐츠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법원의 석명), ¶ 17(“Any injunction granted by a Court of law ought to be effective in nature”). 언론 보도로 Delhi High Court Passes Unique ‘Dynamic+ Injunction’, Bar & Bench (Aug. 21, 2023), <https://www.barandbench.com/news/delhi-high-court-passes-unique-dynamic-injunction-to-curb-illegal-streaming-of-existing-and-future-content-of-6-studios> 참조.

17) Reva Satish Makhija, Analysing “Dynamic+” Injunctions: Delhi High Court’s Latest Judicial Invention, SpicyIP (Sept. 4, 2023), <https://spicyip.com/2023/09/analysing-dynamic-injunctions-delhi-high-courts-latest-judicial-invention.html>(6개 스튜디오와 16개 FIOL의 구성 및 법리적 문제점 분석); Delhi HC Passes ‘Dynamic+ Injunction’ Order to Protect Future Works, AZB & Partners (Oct. 20, 2023), <https://www.azbpartners.com/bank/delhi-hc-passes-dynamic-injunction-order-to-protect-future-works/>(위 명령을 “a first of its kind order”로 평가).

16개 사이트와 그 변형 사이트들이 원고들의 현재 및 장래 콘텐츠를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추가 사이트를 당사자로 추가할 자유를 부여한다.¹⁹⁾ 실제 주문에서 법원은 “피고들(모두 불법 사이트임)이 원고들의 저작물 – 원고들의 저작권 귀속에 다툼이 없는 장래 저작물을 포함하여 – 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스트리밍·복제·배포·공중전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그 대상을 소장에 특정된 사이트뿐 아니라 “그 미래·리다이렉트 사이트 또는 영숫자 변형 사이트, 나아가 명칭·브랜딩·정체성 또는 콘텐츠의 출처에 의하여 피고들의 사이트와 연관된 사이트”에까지 미치도록 하였다.²⁰⁾ 확장 방식으로는, 원고가 당사자 추가(impleadment) 신청서에 진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Registrar에게 제출하면 그 사이트 및 해당 저작물(장래 저작물 포함)에 대하여 금지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²¹⁾ 또한 법원은 ISP에 대한 차단, DoT에 대한 1주일 이내의 차단명령 발령, 그리고 도메인 등록기관(DNR)에 대한 도메인 잠금·정지 및 등록자 정보 제공을 함께 명하였다.²²⁾ 이 전체 흐름은 아래 [도표 1]과 같다.

18) Universal City Studios, supra note 16, at 17 of 21(변형 사이트의 동적 성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to protect copyrighted works as soon as they are created”는 취지로 동적 추가 금지명령을 발령). 다만 법원은 장래 저작물에 대한 금지명령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Such grant of an injunction would depend on the fact situation”이라고 판시하였다. Delhi High Court Passes ‘Dynamic+ Injunction’ Restraining Rogue Websites From Streaming Present And Future Content Of Six American Studios, LiveLaw (Aug. 27, 2023), <https://www.livelaw.in/high-court/delhi-high-court/delhi-high-court-dynamic-injunction-rogue-websites-netflix-universal-warner-bros-23577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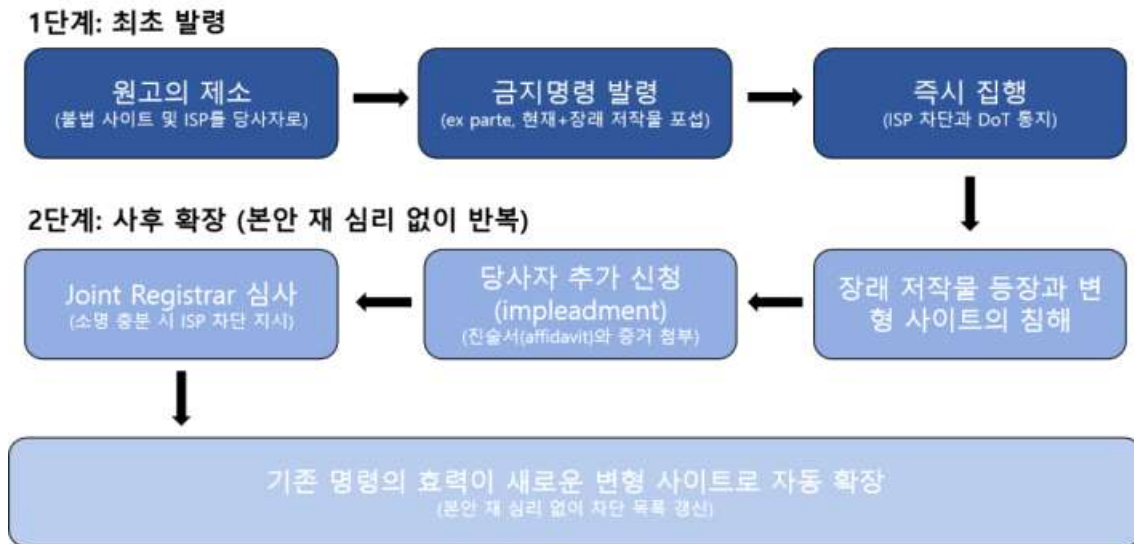
19) Universal City Studios, supra note 16, at 9, 17 of 21(피고 1-16 및 그 변형 사이트에 대한 금지 주문, 당사자 추가(impleadment) 허가). 주문의 요지는 AZB & Partners, supra note 17에 “not only to the specific rogue websites listed in the suit, but also to any mirror or redirect websites”로 정리되어 있다.

20) Universal City Studios, supra note 16, ¶ 20 (“an ex parte ad interim injunction is granted restraining the Defendants, who are all rogue websites, from in any manner streaming, reproducing, distributing,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and/or communicating to the public any copyrighted content of the Plaintiffs including future works of the Plaintiffs, in which ownership of copyright is undisputed, through their websites identified in the suit or any mirror/redirect websites or alphanumeric variations thereof including those websites which are associated with the Defendants’ websites either based on the name, branding, identity or even source of content.”).

21) Universal City Studios, supra note 16, ¶ 20 (당사자 추가 신청과 진술서 제출 시 “the injunction shall become operational against the said websites and qua such works”라고 판시). 다만 법원은 “This is not to say that in every case, an injunction qua future works can be granted”라고 유보하였다. Id.

22) Universal City Studios, supra note 16, ¶¶ 87 이하 (ISP 차단, DoT의 1주일 내 차단명령, DNR의 도메인 잠금·정지 및 등록자 정보 제공 지시). 정리는 Universal City Studios LLC. and Ors. v. DotMovies.Baby and Ors., S&C IP (Sept. 2, 2023), <https://www.sc-ip.in/post/universal-city-studios-llc-and-ors-v-dotmovies-baby-and-ors> 참조 (법원이 “(a) DoT의 차단명령, (b) ISP의 차단, (c) DNR의 도메인 잠금·정지 및 KYC 정보 제공”을 명하였다고 요약).

[도표 1] Dynamic+ 금지명령의 절차 구조 (1단계 최초 발령 → 2단계 사후 확장)



V. 한국의 행정적 대응: 저작권법 제133조의4 긴급차단

종전에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였고, 그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유통 수명이 짧은 콘텐츠는 이미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문제가 있었다.²³⁾ 2026년 개정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장관에게 독자적인 차단 권한을 부여하였다.²⁴⁾

개정법은 두 가지 차단 권한을 구분한다. 일반 접속차단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반면, 긴급차단은 ① 침해행위가 명백하고,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③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것이라는 세 요건이 충족되면 사전 심의 없이 곧바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을 명하고 그 사실을 사후에 심의위원회에 통지하는, 이른바 “선차단·후심의” 구조를 취한다.²⁵⁾ 시행 첫날 문체부는 위 요건에 부합하는 34개 사이트를 선

2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개에 대한 최초 긴급차단 명령 통지” 보도자료(2026. 5. 11.) (종전에는 관련 권한이 없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접속차단 조치에 의존”하여 왔다고 설명). 제도 시행의 배경에 관한 보도로 “불법 사이트, 이제는 즉시 막는다-긴급차단제 11일 시행”, 전자신문 (2026. 5. 10.), <https://www.etnews.com/20260510000040> 참조.

24)저작권법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부칙 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efInfoP.do?lsiSeq=148848>. 개정 경과와 취지에 관하여는 법무법인(유) 세종, “저작권법,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률신문 (2026. 3. 5.),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53> 참조(문체부가 ‘K-콘텐츠 불법 유통’을 “문화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2대 난치병”의 하나로 규정한 것을 개정 배경으로 소개).

25)저작권법 제133조의4 제1항(“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정하여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하였다.²⁶⁾

한국의 행정적 대응은 인도의 사법적 대응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고 변형 사이트에 대응력 있는 차단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서로 다른 국가작용을 통하여 추구한다. 신속성의 측면에서, 한국의 “선차단·후심의” 설계는 변형 사이트마다 새로운 진술서를 요구하는 인도보다 구조적으로 빠르지만, 앞서 서술했던 바처럼 인도의 판결주문은 그 자체로 동적인 반면, 한국의 명령은 정적이고 사이트 특정적이어서 새로운 변형 사이트에 대한 대응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결정을 요한다. 따라서 신속하게 명령을 발령한다는 점에 그 강점이 있을 뿐, 기존 명령의 상대방이 새로 등장한 변형 사이트로 자동적으로 확장되는 효과는 없다.

VI. 한국 사법 체계에 동적 요소를 도입할 경우의 유의점

제V장에서 본 것처럼 한국이 현재 갖춘 것은 행정적 트랙뿐이고, 관리자가 법원에 침해금지청구나 가처분을 구하는 사법적 트랙에는 인도와 같은 확장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법 트랙에 동적 요소를 접목하자는 논의는 그 자체로 경청할 만하다. 다만 인도의 경험은 그러한 제도가 집행의 효율성과 함께 적지 않은 부작용을 수반한다는 점 또한 보여준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입법 설계를 제안하기보다, 도입을 검토할 경우 특히 유의하여야 할 지점들을 정리한다.

1. 도입을 검토할 경우 유의하여야 할 지점

가. 확장 범위의 확정. 동적 금지명령의 핵심은 새로 등장한 사이트가 이미 금지된 사이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이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확장의 한계가 사실상 무한정 넓어질 수 있다. 인도 법원은 “불법 사이트” 여부를 가리는 질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전면적 차단은 비례성과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판단은 결국 개별 사안에 맡겨져 과잉차단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

접속을 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제2항(“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일반 접속차단과의 구별에 관하여는 법무법인(유) 광장,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법률신문 (2026. 3. 9.),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448> 참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서도 접속차단을 명하는 이른바 ‘긴급차단’ 조치”로 설명), 절차의 운영에 관하여는 한국저작권보호원, “긴급차단·접속차단”, <https://www.kcopa.or.kr/lay1/S1T10C510/contents.do> 참조.

26)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supra note 17(“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긴급차단의 요건에 부합하는 최초의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총 34개를 선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대상에 ‘뉴토끼’ 등이 포함되었음을 확인), 보도로 “불법 저작권 사이트 34곳 첫 긴급 차단… 문체부 ‘신속 대응 강화’”, 이투데이 (2026. 5. 11.), <https://www.ETODAY.co.kr/news/view/2583263> 참조.

기되어 왔다.²⁷⁾ 확장의 범위를 판결주문 단계에서 가능한 한 특정하여 두는 것이 이러한 우려를 줄이는 출발점이 된다.

나. 소명자료의 편파성. 확장 국면에서는 상대방이 부재한 상태에서 관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기 쉽다. 인도에서도 검증되지 아니한 진술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오인 차단은 적법한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남기므로, 관리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 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교차검증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다. 판단 주체. 확장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이 아닌 자에게 판단을 맡기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²⁸⁾ 인도가 Joint Registrar에게 이 기능을 위임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확장 여부의 판단이 단순한 사실확인을 넘어 갈수록, 판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긴장은 커진다. 이의·불복 경로가 형식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능하는지가 관건이다.²⁹⁾

라. 장래 저작물에 대한 확장의 신중함. 동적 추가 금지명령은 아직 창작되지 아니한 저작물까지 보호 범위에 넣는다. 한국 저작권법도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어 이론적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³⁰⁾ 권리의 귀속과 보호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금지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다툼을 사후로 미루고 그 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인도 법원조차 이러한 구제가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유보한 점은 시사적이다.

27)UTV Software, supra note 6, ¶ 58(불법 사이트 판정을 위한 고려 요소의 열거), ¶ 80(전면적 차단은 비례성과 필요성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The onus is on the right holders to prove”라고 판시). 인도에서 차단 명령이 광범위하게 작성되어 왔다는 실증적 지적으로는 supra note 5의 자료 참조.

28) 대한민국에서도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이 절차적 기능을 수행하는 예가 있다. 민사조정법 제5조 제2항은 조정의 구술신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조정신청조서를 작성·기명날인하도록 한다. 다만 이는 신청의 접수·조서작성이라는 절차적 기능에 그치고, 확장 여부의 실체적 판단과는 성질을 달리 한다.

29)인도에서 이 위임을 두고 법원이 “extended the power of blocking websites to an administrative agency”라고 평가한 견해로, Akanshha Agrawal, India’s First Dynamic Injunction Issued to Block Access to ‘Rogue Websites’, The IPKat (July 15, 2019), <https://ipkitten.blogspot.com/2019/07/indias-first-dynamic-injunction-issued.html> 참조.

30)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론적으로는 저작권을 저작물의 창작을 금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권리로 인지하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는 민법 제149조를 원용하여 장래 저작물에 대한 보전을 구성할 여지는 거론할 수 있다. 민법 제149조(“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인도 법원도 같은 논리에서 “to protect copyrighted works as soon as they are created”를 근거로 들었으나, 동시에 “Such grant of an injunction would depend on the fact situation”이라고 유보하였다. Universal City Studios, supra note 13; LiveLaw, supra note 15 참조.

2. 소결

인도 모델이 보여준 집행상의 효율성은 분명하지만, 그 대가 또한 분명하다. 한국은 이미 신속한 행정적 대응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법 트랙에 동적 요소를 도입하는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 대응을 대체하는 관점이 아니라 반복적 침해나 손해배상과 연계된 분쟁 등 행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VIII. 결론

인도의 사법부는 제정법상 차단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민사소송법의 고유권한으로부터 동적 금지명령과 동적 추가 금지명령을 구축하여, 비례성 부담과 재판작용에 근접해 가는 Joint Registrar의 역할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적응성과 사법적 안전성을 확보하였다.³¹⁾ 한국의 입법부는 행정적 긴급차단 권한을 통하여 신속성과 제도적 명확성을 함께 확보하였으나, 변형 사이트와 장래 저작물의 문제는 행정 트랙에서도 사법 트랙에서도 해결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한국의 사법적 대응에 관하여 인도의 판결주문 구조를 그대로 옮겨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법역은 절차법의 구조도, 제3자에 대한 재판의 효력에 관한 원칙도 다르기 때문이다. 제도의 형식뿐만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도입 논의에서도 확장 범위의 확정, 소명자료의 편파성 등의 유의점들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31) Code of Civil Procedure, 1908, § 151("Nothing in this Code shall be deemed to limit or otherwise affect the **inherent power** of the Court to make such order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ends of justice ..."). UTV Software, *supra* note 7, ¶ 99(§ 151의 고유권한에 근거하여 금지명령의 효력을 변형 사이트로 확장). 제정법 조항에 직접적인 차단 근거가 없었기에 오히려 법원이 고유권한을 통해 구제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 점이 한국과 같이 행정적 차단 규정을 둔 법제와 대비된다.